코로나19 위기극복, 연구현장 추가 지침 (2판)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'20.4.16.(목) >

1.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

- **(연구비 이월 허용)** 위기상황 종료 후 **차년도까지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**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 허용

- **(장비 도입기한 연장)** 불가피하게 **연구장비 도입이 지연**된 경우, **장비 도입기한**(종료 2개월 전)**을 한시적으로 예외적 연장**(연구기간 연장 병행)

※ 필수 연구장비, 불가피한 장비 도입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 연장 허용 (최대 연장허용 기간 :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기간)

- **(간접비 회수 보류)** **직접비 집행률의 저조**에 따른 **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예외적 보류,**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재검토

※ 단,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기간이 마지막 연구기간이 아닌 경우,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유예 허용

2.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지원

- **(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)** ① 단순 지연*시 **연구기간 연장 허용,** ②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** **연구계획 변경 또는 종료 검토**

* 연구장비·재료 수급, 협력기관 운영차질 등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 가능

** 해외기관 방문, 인력 파견, 국외 교육 등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

· 특히, **종료·단계평가**를 앞둔 경우, 연구기간을 적극 연장하여 **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**

- **(온라인 활용)** **국내외 교육, 국제협력, 사업화**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, **온라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**

※ 국제협력 과제의 경우, 출장 취소 등에 따라 절감된 연구비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 구축 허용(필요시 협약변경)

- **(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)**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**연구실 운영비***(손세정제, 마스크 등) **집행 독려 및 정산 면제**(직접비 5% 이내)

* 과기부 소관 처리규정 [별표2] 연구활동비 7.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